

# 학생상별에 관한 규정

(제정 1993. 9.13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칙 제12장에 따라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 재학생의 상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상별의 기록)** 상별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별 대장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의견청취)** 상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이나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, 지도교수 및 참고인을 상별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공개)** 포상과 징계는 공고로써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.

## 제2장 상별위원회

**제6조(상별위원회)** 상별위원회는 학교상별위원회와 단과대학상별위원회로 구분·설치한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학교상별위원회는 선교봉사처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해당 대학원장, 해당 학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5.18., 2014.1.1.>

② 학교상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. <개정 2012.5.18>

③ 단과대학 상별위원회는 해당 학장,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으로 구성한다.

④ 단과대학 상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장이 된다.

⑤ 상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. <신설 2018.11.19.>

**제8조(임기)** 상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의결정족수)** ① 상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3장 포상

**제10조(포상대상)**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

2. 선행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
3. 학교발전과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크게 기여한 학생
4. 그 밖에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

**제11조(포상의 종류)** 포상은 성적우수상, 공로상, 선행상으로 구분한다.

**제12조(포상의 시기)**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.

1. 정기포상은 개교기념일, 졸업식일, 입학식일에 수여한다.
2. 수시포상은 공적 발생 시에 수여한다.

**제13조(포상발의)** 학생취업처장 또는 소속 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. 다만, 신입생 포상 등 매년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포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18., 2018.11.19.>

1. 공적조서 1부 [별지 제1호 서식]
  2.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 또는 학생취업처장 추천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- <개정 2012.5.18>

**제14조(포상절차)** ① 소속 학장이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을 추천·포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상별위원회에 상정·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상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② 전항 단서의 경우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4장 징계

**제15조(징계대상)**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**제16조(징계의 종류)**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, 유기정학은 7일 이상 4주 이내로 한다. 다만, 무기정학은 4주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17조(징계의 양형)** 상별위원회는 징계 양형기준[별표 제1호]을 참고하여 징계의 양형을 의결하고, 징계사유 행위의 유형과 경중, 고의성 여부 및 평소품행, 학업성적, 공적, 반성하는 태도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다.

[본조개정 2018.11.19.]

**제18조(징계발의)** 학생취업처장 또는 소속 학장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18>

1. 징계 요구서 1부 [별지 제3호 서식]
2. 사건 경위서 1부 [별지 제4호 서식]
3. 신고인,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서 1부 (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) [별지 제5호 서식]
4.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학과장(전공주임) 또는 학생취업처장 의견서 1부 [별지 제6호 서식]

**제19조(징계절차)** 제1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에 회부·심의 후 징계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학생취업처장은 학교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18.11.19.]

**제20조(권리의 정지)** ①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정지된다.

② 학생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 <개정 2018.11.19.>

③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적변동(휴학 및 자퇴)을 하더라도 복학 및 재입학 시 징계처분 사실은 연속적으로 유효하며, 휴학 및 자퇴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8.11.19.>

**제21조(특별지도)** 학생이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해당학과장(전공주임)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11.19.>

**제22조(특별감면 및 해제)** 징계중인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상벌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징계기간 중이라도 이를 감면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**제23조(가중처벌)** 총장은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에게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.

**제24조(통보)** 총장은 학교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 통지서[별지 제7호 서식]에 따라 징계대상 학생과 학부모, 지도교수 및 해당학과장(전공주임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19.>

**제25조(징계의 재심의)** ① 징계처분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하여 징계 재심의 요청서[별지 제8호 서식]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2.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- ③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학교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및 재의결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11.19.]

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유보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상벌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

른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상별에 관한 시행세칙(규정 제138호)은 자동폐지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

## 징계 양형기준

징계사유	징계 양정	근신 <sup>1)</sup>	유기정학	무기정학	제적
1. 품행 불량					
가. 폭행상해 및 협박			○	○	○
나. 인권침해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) <sup>2)</sup>		○	○	○	○
다. 절도 및 공금 유용			○	○	○
라. 문서 위/변조, 허가 없는 간행물 제작·배포		○	○	○	
마. 대학의 명예 훼손		○	○	○	○
바. 본교 설립이념(기독교 정신)에 위배			○	○	
사. 형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 <sup>3)</sup>		○	○	○	○
아. 기타 품행 불량		○	○	○	
2. 학업 관련					
가.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			○	○	○
나. 시험 중 부정행위 <sup>4)</sup>			○	○	○
다. 대리시험				○	○
라. 과제물 등 제출물 표절		○	○		
3. 기타 사항					
가. 정보(게시)물 무단 열람, 변조, 훼손, 유출, 정보시스템 해킹 <sup>5)</sup>			○	○	○
나. e-mail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		○	○	○	
다. 교직원 서명 위조		○	○		
라. 시설물 무단 사용, 학교재산 무단 방출 및 공공시설 사적 점거, 파손 <sup>6)</sup>		○	○	○	
마. 수업 방해			○	○	○
바. 미 승인 단체 조직 및 집회 <sup>7)</sup>				○	○
사. 해당 징계사유의 행위의 반복			○	○	○

1)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30시간(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100시간)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성폭력·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2) 인권침해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)에 관한 처벌

가. 사전계획 없이 순간적인 인권침해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

량행위)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(동조자 포함)에게 내·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.

- 나. 인권침해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)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해자(동조자 포함)와 공간 분리, 수업 분리, 강제 휴학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3) 형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의 판별은 형법의 기준에 따른다. 단, 법률적으로 기소유예 및 훈방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학생징계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사건보고서를 참고한다.
- 4)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
  - 가. 사전 계획한 바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무효로 한다.
  - 나.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, 벽, 기타 보일 수 있는 곳에 자료를 기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일의 전 과목을 무효로 한다.
  - 다. 본교 재학생간의 대리시험 및 답안지 교환, 시험답안지를 외부로부터 반입한 자는 해당학기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.
  - 라. 타교 학생의 대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타교 학생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는 제적한다.
- 5) 정보(게시)물이란 학사관리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공개 상태의 정보(게시)물에 한한다.
- 6) 학교 시설물 무단 사용 및 학교 재산 무단 방출, 실화 및 방화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변상한다. 재산상 피해액이 변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- 7) 단체란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- 8) 생활관(기숙사) 내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생활관 운영세칙을 따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공적조서

- [ ] 성적우수상
- [ ] 공로상
- [ ] 선행상

소 속 대 학		학 과	
학 년		학 번	
성 명		생 년 월 일	
주 소			
공 적 기 간			
공적 내용			
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조사자			
소 속			
직 책		성 명	(서명 또는 인)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포상 추천서

소 속 대 학			
학 과			
학 년			
학 번			
성 명			
생 년 월 일			
추천 요 지			
위와 같이 학생 포상을 추천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소 속			
직 책		성 명	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징계요구서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학칙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46조(상벌위원회)
- 나.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8조 (징계 발의)

2. 위 근거에 의거하여 학교상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에 관한 심의를 발의합니다.

### 3. 징계대상자

소 속 대 학	학 과	학 년	학 번	성 명

### 4. 징계사유

대상자	관련 근거	비고

### 5. 발의 주요내용

-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(시간) (장소)에서 신고인(피해자) 학생에 대해 000을 한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, 이에 대한 징계 요청

### 6. ○○대학 상벌위원회 의견서

- 본 사건은 000에 해당되며,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처리의 전례에 비추어 피신고인(가해자)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청됨.

○○대학 상벌위원회 위원장 (인)

학교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## 사건 경위서

구	분	신	고	인	피	신	고	인
소	속	대	학					
학		과						
학		년						
학		번						
성		명						
생	년	월	일					
주		요		경		위		
신		고		인		요		청
신		고		일				
<p><b>1. 신고인 상담 및 소견</b>                  가. 상담 내용                  나. 소견</p> <p><b>2. 피신고인 상담 및 소견</b>                  가. 상담 내용                  나. 소견</p> <p><b>3. 신고인 및 피신고인 진술서 요약</b>                  가. 신고인 진술 요약                  나. 피신고인 진술 요약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               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								
소	속							
직	책		성	명	(서명 또는 인)			

[별지 제5호 서식]

## 진 술 서

- [    ] 신고자(피해자)
- [    ] 피신고자(가해자)
- [    ] 참고인(제3자)

소속대학		학      과	
학    년		학    번	
성    명	(서명)	생    년    월    일	
주    소			
본인은 20 . . , 00대학 0000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진술합니다.			
사건 개요	※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바라는 조치사항			
조사자 의견			
조사자			
소    속			
직    책		성    명	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6호 서식]

## 의견서

소	속	대	학			
학				과		
학				년		
학				번		
성				명		
생	년	월	일			
의견내용				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		
소	속					
직	책	성	명	(서명 또는 인)		

[별지 제7호 서식]

## 징계처분 통지서

소 속 대 학		학 과	
학 년		학 번	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	
사 건 명			
징계처분 일자			
징계 사유 (조치 사항 의결 사유)			
징계처분 내용 (조치 사항)			
<p>전주대학교 학교상벌위원회는 「학생상벌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, 위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전 주 대 학 교 총 장 (인)</p> <p>징계 학생(학부모) 귀하</p>			

[별지 제8호 서식]

## 징계 재심의 요청서

소 속 대 학		학 과	
학 년		학 번	
성 명		생 년 월 일	
주 소			
사 건 명			
징계처분 일자			
징계처분 내용 (조치 사항)			
징계 재심의 신청 사유			
<p>위와 같이 징계 재심의를 요청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요 청 인 : (인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전주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